

사범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지침

제정 2004. 4. 1.
개정 2004. 6.18.
개정 2008. 3.24.
개정 2011. 3.17.
개정 2019. 6. 4.

1. 목 적

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(이하 “인사규정”이라 한다) 제2장과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(이하 “시행세칙”이라 한다) 제2장에 따른 신규채용후보자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6.4.>

2. 연구실적물

- ① 신규채용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논문을 심사대상 연구실적물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. <개정 2019.6.4.>
- ② 박사학위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출판하여 복수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경우 그 연구실적물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
- ③ 학술지에 아직 발간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술지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 여부 기한 등은 다음과 같다.
 - 심사 완료된 최종본 상태에서 출판예정일이 임용예정일 이전인 논문만을 접수하며, 이러한 사실이 게재예정증명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.
 -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임용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.
 -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응모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동일하여야 함(추가·삭제·수정 불인정).
- ④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5년 이내의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실적물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한다. 다만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. <신설 2011.3.17.>

3. 심사단계 및 평가비중

- ① 심사는 1단계 심사(기초 및 전공심사)와 2단계 심사(공개발표 심사 등)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08.3.24.>
- ② 평가비중은 1단계 심사 70%(연구실적 60%, 총괄연구업적 10%), 2단계 심사 30%(공개발표(국제화능력 포함) 20%, 교육 및 연구계획(자기소개서 포함) 5%, 임용 적합성 5%)로 하며, 총점이 80%이상인 자를 “적격”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08.3.24.>
- ③ 2단계 심사대상자는 1단계 심사 평가결과 적격자중 상위 성적(연구실적물 내용평가점수+총괄연구업적 평가점수)순으로 학장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한다.

4. 1단계 심사(기초 및 전공심사)

1) 연구실적물

- ① 학과장은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본교 교원 4인 이상 6인 이내, 타교 교원 3인 이상을 추천한다. 단, 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하게 할 교원이 본교에 없거나 하위직일 경우 타교 교원을 추천할 수 있다.
- ② 학과장은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응모자의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, 응모자의 현 재직대학 교원, 심사용으로 제출한 연구실적물 공저자, 추천서 발급자 등 연구실적물 심사에 제척사유가 있는 교원을 추천할 수 없다.
- ③ 학장은 학과장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본교 교원 3인 이내, 타교 교원 2인 이상 총 5명을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심사를 의뢰한다.
- ④ 지명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학장이 심사 의뢰한 연구실적물을 심사하고 연구실적심사위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- ⑤ 연구실적물 심사는 전공부분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과 내용평가를 실시하되, 내용평가점수는 1단계 심사 성적에 반영하고 적합성 평가점수는 1단계 심사 성적에 반영하지 않으나 적격여부 판단기준으로 삼는다.
- ⑥ 학장은 연구실적심사위원심사보고서에 따라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실적물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, 내용평가점수를 환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.

2) 총괄연구업적

- ① 학과장은 총괄연구업적 심사에 제척사유(상기 1)-②호적용)가 있는 교원을 제외한 본교 교원 또는 타교 교원으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.
- ② 학장은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5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총괄연구업적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. 단,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총괄연구업적 심사위원을 겸할 수도 있다.
- ③ 총괄연구업적은 응모자가 제출한 총괄연구업적 목록을 토대로 모집분야와 적합성,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- ④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와 최저 점수 간에 5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심사 여부는 본 대학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 다만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모집분야의 적합성 또는 내용평가 점수가 부적격일 경우 재심사하지 않는다. <개정2004.6.18.>

5. 2단계 심사대상자 선정

- ① 2단계 심사대상자는 1단계 심사의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적격자 내용평가점수의 환산점수와 총괄연구업적 평가점수를 합하여 상위 성적순으로 학장이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정한다.
- ② 학장은 해당 학과장과 당사자에게 2단계 심사대상자 선정 사실을 서면,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.

6. 2단계 심사(공개발표 심사 등)

1) 공개발표(공개강좌), 교육 및 연구계획 심사

- ① 학과장은 공개발표(공개강좌), 교육 및 연구계획 심사위원으로 2단계 심사대상자의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, 응모자의 현 재직대학 교원, 심사용으로 제출한 연구실적물 공저자, 추천서 발급자 등 연구실적물 심사에 제척사유가 있는 교원을 제외한 본교 교원 또는 타교 교원으로

5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.

- ② 학장은 학과장의 추천에 따라 5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공개발표(공개강좌), 교육 및 연구계획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.
- ③ 공개발표(공개강좌)의 평가항목은 강의 내용,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 활용 능력, 전달능력 및 국제화능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학과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고, 공개발표(공개강좌)의 시간은 학과별로 동일하게 정하되 개인당 20분 이상 실시하여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- ④ 공개발표(공개강좌)의 사용 언어는 각 학과별로 정하며, 사용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제화 능력 평가는 공개발표(공개강좌) 내용을 영어로 요약하여 10분 이상 발표한 것을 반영한다.
- ⑤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는 2단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, 교육 및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모집분야와 적합성을 고려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와 최저 점수 간에 2.5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심사 여부는 본 대학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2) 임용 적합성 심사

- ① 임용 적합성 심사는 본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.
- ② 임용 적합성 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, 1단계 평가 성적, 공개발표(공개강좌),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 성적 등을 고려하여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- ③ 전체 인사위원의 심사결과가 평균 4점 이상인 경우 “적격” 으로 인정한다. <신설2008.3.24.>
- ④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둘째자리로 반올림한다. <신설2008.3.24.>
- ⑤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. <신설2008.3.24.>

평가항목	배점	점수	합계	비고
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	2			
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 등	2			
대학발전 기여 가능성	1			
계	5			

7. 인사위원회

- ① 인사위원회는 2단계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와 각 단계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어떤 후보자를 임용 추천할 것인지를 심의 결정한다.
- ② 임용 추천되는 후보자의 임용 직명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“총괄연구업적” 과 “교육 및 연구계획” 의 각 항목 평가점수를 비교하여 각각 최고와 최저 점수 간에 항목 만점의 1/2이상 점수 차이가 날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인사규정, 시행세칙 및 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<개정 2019.6.4.>

8. 학장, 학과장 임무

- ① 학과장은 신규채용 심사 시 1단계 심사위원, 2단계 심사(임용 적합성 제외)위원 후보자 추천권과 본 지침에서 언급한 제척사유가 없는 경우 “총괄연구업적”, “공개발표(공개강좌)”, “교육 및 연구계획” 항목의 심사위원이 되며 동 항목 보고서 작성 책임자가 된다. <개정 2019.6.4.>
- ② 학과장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에서 ①항의 직무를 수행할 교수 1인을 학장에게 추천하여 승인 받아 해당 신규채용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채용 업무에 한하여 학과장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6.4.>

- ③ 학장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휘 감독하며, 각종 보고서 작성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. <개정 2019.6.4.>

9. 기타사항

- ① “총괄연구업적”, “공개발표(공개강좌)”, “교육 및 연구계획” 항목 평가는 별첨 서식을 사용 평가한다.
- ② 공채심사종합평가표의 각 항목 점수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.
- ③ 인사규정, 시행세칙, 본 지침 및 신규채용 관련공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 <개정 2019.6.4.>

부 칙 (2008.3.24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3.17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6.4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첨]

총괄연구업적 평가표

※ 총괄연구업적물번호 : 총괄연구업적물 우측 상단에 기재됨

채용분야	총괄연구 업적 물 번호	평 가 점 수(10점 만점)

심사위원 : (인)

서울대학교사범대학 ○○○○과

공개발표(공개강좌) 평가표

채용분야	성 명	평 가 항 목	평가점수(20점 만점)
		① 강의 내용 ②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 활용능력 ③ 전달능력 ④ 국제화 능력(영어)	()점
		① 강의 내용 ②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 활용능력 ③ 전달능력 ④ 국제화 능력(영어)	()점
		① 강의 내용 ②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문용어 활용능력 ③ 전달능력 ④ 국제화 능력(영어)	()점

심사위원 : (인)

서울대학교사범대학 ○○○○과

공채심사종합평가표

① 채용분야 (채용인원)	()	② 채용예정 직명			③ 성명 (한자)	④ 생년월일	(만세)		
⑤ 심사사항		⑥ 심사결과평가 의견					⑦ 평가비중	⑧ 평가점수	
기초 및	⑨ 연구실적 (모집분야와의 적합성, 학문적 우수성 평가)	심사논문 총제출판수	내용평가 반영점수 (점)	모집분야와의 적합성 적격 부적격		내용평가 점수 (5점만점)	논문평가 순위	60%	
		예)5년간 5편(400점)	예) 5편(220점)	(점)	(점)		()명중 ()위		
전공 심사	⑩ 총괄연구실적 (교육능력 등 심사)	총 연구업적 : 편 <논문 : 편>, <저서 : 권>, <발표(전시)회 : 회>, <기타 : > <평가 요지>					10%		
면접 심사	⑪ 공개발표 (국제화능력 포함)	<평가 요지>					20%		
	⑫ 교육 및 연구계획 (자기소개서 포함)	<평가 요지>					5%		
	⑬ 임용 적합성 ※ 단과대학(원) 인사위원회 평가	<평가 요지>					5%		
⑭ 총평 및 총점 ※ 대학(원)장 평가	<평가 요지>					100%			

년 월 일

과장 (인)

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(인)